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 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 사장 강성공



2020년 2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3호

## 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9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.
- ② 임원 중 사장 1인은 상임으로 하고,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, 감사는 시의 회계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비상임이사는 건축, 토목, 개발사업 등 관련 전문가와 회계, 경영, 세무, 법률, 행정 등의 전문가로 하되, 시의 공사 소관업무 담당국장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.
- ④ <삭 제>
- 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사장·감사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양 수 (390-7617)

# 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.</p> <p>② 임원 중 사장 1인은 상임으로 하고,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, 감사는 시의 회계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③ 비상임이사는 건축, 토목, 개발사업 등 관련 전문가와 회계, 경영, 세무, 법률, 행정 등의 전문가로 하되, 시의 공사 소관업무 담당국장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.</p> <p>④ <u>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</u></p> <p>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사장·감사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9조(임원) 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 &lt;삭 제&gt;</p> <p>⑤ &lt;현행과 같음&gt;</p>